

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중 “지방자치법 제138조 및”을 삭제한다.

제 8 조 제 1 항중 “국무총리”를 “내무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3. 서울특별시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특별시市長 提出)

(12時 53分)

○委員長 禹炅仙 議事日程 第3項 서울특별시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.

(議事條 3打)

먼저 提案者인 서울특별시市長을 代理하여 住宅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住宅局長 金昌培 住宅局長입니다. 議政活動을 통해서 市民生活 향상과 市政發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委員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建築條例의 改正案 主要骨子は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.

첫째는 災害危險地區의 指定에 대한 建設部의 條例準則이 改正되었습니다. 이 後續措置로써 常習浸水地域이나 浸水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해서 地下室이나, 駐車場이나, 機械設備室, 창고 使用등으로만 基準을 정하는 內容과 또 한가지는 建設部 準則에 아파트型 工場의 規模를 調整하는 內容으로서 一般住居地域內 아파트型 工場의 規模가 현재 5,000㎡에서 3,000㎡로 縮小가 되고 自然綠地 地域內에서는 2,000㎡까지 新規로 建築이 가능하며 또 永久賃貸아파트 團地內에서 1萬㎡까지 建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內容이 되겠습니다.

委員님들께서 저희들이 上程한 議案을 檢討하시고 通過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

이상입니다.

○委員長 禹炅仙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.

○專門委員 宋在瓊 서울특별시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.

1992年 5月 27日字 市長이 提出한 서울특별시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內容을 檢討한 바, 災害危險區域의 建築基準 및 아파트型 工場의 建築基準을 變更 調整코자 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.

첫째, 서울市內 常習浸水地域에 대하여 第3種 災害危險區域으로 指定하고 이 區域內에 있는 浸水時 큰 被害가 우려되는 住宅, 近隣公共施設, 또는 醫療施設 등의 地下1層以下部分, 地下層을 포함합니다만 駐車場, 機械施設 등으로만 使用토록 하고 浸水에 따른 被害를 줄일 수 있도록 變更코자 하는 內容에 있습니다.

다음에는 아파트型 工場의 許容規模를 住居環境保護를 위하여 一般住居地域은 縮小指定하되 종전에 5,000㎡에서 3,000㎡로 縮小하고 自然綠地地域內에서는 工場敷地難 解消를 위하여 2,000㎡까지 建築이 가능하도록 新設하였습니다.

다음에 永久賃貸住宅團地는 零細民이 集團居住하는 특성 등을 고려해서 이들의 所得源 確保를 위해서 地域에 관계없이 1萬㎡까지 建築할 수 있도록 調整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. 이 관련 條例인 서울특별시建築條例 第29條 「區域의 세분」입니다. 그리고 第29條2의 「用途制限」과 第49條의 3 「아파트型 工場의 規模」를 改正하고자 하는 內容으로써 改正條例案은 適當한 것으로 思料되었기에 檢討報告를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

○委員長 禹炅仙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. 그러면 市長이 提出한 서울특별시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 質疑와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金委員님 質疑해 주세요.

○金錫浩委員 常習浸水地域이라고 했는데 常習浸水地域은 서울市 傘下에 몇 군데가 있